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1184 호 2019. 7. 11.(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56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2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3호[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4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5호[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70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7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820호[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56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창 평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 주식회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 11층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통신용 중계기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창평동 1207-1번지

나. 면적 : 1.0㎡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7. 3. ~ 2019. 12. 31.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고시 제 2019-16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7월 11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성 명)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정인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소하천명		화봉천, 화동천, 화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04-1번지 외 162필지		
	면적	66,26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소하천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6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8호선)사업
 나. 명 칭 : 울산송정 산업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88-3번지 일원
3. 사업개요(변경)
 (당초) 대로2-68호선(L=223m, B=30.5m, A=11,167㎡)
 (변경) 대로2-68호선(L=223m, B=30.5m, A=11,14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당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기간(변경)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19. 6. 30.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811-16	811-23	도	도	180	106	104	106	공	공	울산광역시				
2	814-1	814-2	도	도	106	40	39	40	공	공	울산광역시				
3	1094-44	1094-89	도	도	1,434	5	5	5	국	국	기획재정부				
4	1107-23	1107-26	구	구	69	5	4	5	국	국	농림수산식품부				
5	898-7	898-8	도	도	408	123	120	123	공	공	울산광역시				
6	788-3	788-8	도	도	394	56	58	56	공	공	울산광역시				
7	789-1	789-1	도	도	4	4	4	4	공	공	울산광역시				
8	789	789-2	답	답	122	14	14	14	김대*	김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15, 408동 1101호(약사동, 래미안 2차)	울산광역시		대위자	
9	790-5	790-5	도	도	169	169	169	169	공	공	울산광역시				
10	790-2	790-11	대	대	601	570	570	570	길호*	길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95-13 우방편선 101-22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시청지점)	지상권 및 근저당	지분 2/3
									김영*	김영*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00-7 웨일즈 빌리트4차 904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시청지점)	지상권 및 근저당	지분 1/3
11	790-6	790-13	대	대	896	216	218	216	길호*	길호*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95-13 우방편선 101-22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지상권 및 근저당	지분 2/3
									김영*	김영*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00-7 웨일즈 빌리트4차 904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지상권 및 근저당	지분 1/3
12	790-3	790-3	대	대	668	668	668	668	박정*	박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0-3				
13	790-1	790-10	전	전	258	71	71	71	박정*	박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0-3				
14	794-9	794-9	대	대	213	213	15	-	김규*	김규*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4길 14(송정동)				
15	1107-8	1107-25	구	구	377	74	74	74	국	국	농림수산식품부				
16	791	791	대	대	436	436	436	436	박창*	박창*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4길 12(송정동)				
17	792	792	대	대	760	760	760	760	박진*	박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06-1203				
18	794-3	794-10	전	전	4,103	3,545	3,560	3,545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4				지분 2261384 /2327500
									강정*	강정*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21-1				지분 33058 /2327500
									박현*	박현*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2				지분 16529 /2327500
									박창*	박창*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4길 12(송정동)				지분 16529 /2327500
19	803-8	803-12	묘	묘	218	6	6	6	박인*	박인*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900				
20	803-9	803-13	전	전	60	10	10	10	박재*	박재*	울산광역시 북구 천하동 658-1 29동 408				
21	1094-1	1094-85	도	도	671	112	108	11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2	803-3	803-11	전	전	1,590	635	639	635	박창*	박창*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1				지분 991 / 15900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4				지분 14909 / 15900
23	803-5	803-5	답	답	274	274	274	274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4				
24	794-7	794-7	대	대	198	198	198	198	공	공	울산광역시 북구				
25	803-6	803-6	대	대	304	304	304	304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송정동지당부락새마을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4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6	804-4	804-5	답	답	4,817	91	91	91	박순*	박순*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529-2 병영삼일@ 103동213호				지분 82729/ 481700
									박성*	박성*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35-1 청우@308호				지분 82729/ 481700
									박정*	박정*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0-19				지분 16529/ 481700
									박정*	박정*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22-8 대관빌라 A동 402호				지분 33339/ 481700
									박용*	박용*	충남 아산 풍화동 713 모아미래도@ 103동1303호				지분 33058/ 481700
									박우*	박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1459-1삼산현대@ 104동1003호				지분 33058/ 481700
									박장*	박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4길 12(송정동)				지분 33058/ 481700
									박창*	박창*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4길 12(송정동)	중울산농업협동조합	울산시 중구 번영로 564(남외동)(연암지점)	근저당권	지분 162200/ 481700
27	801-2	801-2	대	대	198	198	198	198	공	공	울산광역시 북구				
28	803-1	803-10	철	철	1,388	267	272	267	국	국	국토해양부				
29	801-1	801-1	철	철	162	162	162	162	국	국	국토해양부				
30	802-3	802-17	철	철	116	111	110	111	국	국	국토해양부				
31	802-2	802-16	철	철	178	129	122	129	박덕*	박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74				
32	1107-24	1107-28	구	구	100	26	28	26	국	국	농림수산식품부				
33	786-2	786-7	답	답	440	51	53	51	공	공	울산광역시				
34	1094-50	1094-91	도	도	81	78	78	78	국	국	국토해양부				
35	790-4	790-12	전	전	764	260	259	260	박정*	박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0-3	중울산농업협동조합	울산시 중구 번영로 564(남외동)(연암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6	1094-51	1094-92	도	도	540	38	34	38	국	국	국토해양부				
37	793	793-1	대	대	496	181	181	181	강형*	강형*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48-2				
38	794-6	794-12	답	답	212	73	73	73	최상*	최상*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1				지분 119 /424
									송정동 지당부락 새마을회	송정동 지당부락 새마을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4				지분 305 /424
39	796	796-1	답	답	526	71	69	71	최원*	최원*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4길 16(송정동)				
40	801-7	801-9	답	답	181	81	82	81	박철*	박철*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압류	지분 1/2
									공	공	울산광역시 북구				지분 1/2
41	799-10	799-15	도	도	120	62	66	62	공	공	울산광역시 북구				
42	801-3	801-8	답	답	845	147	150	147	강혜*	강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1 현대글로리아@ 1-1106				
43	799-7	799-14	도	도	123	40	39	40	이양*	이양*	경북 경주 서부동 207-13				
44	1094-35	1094-88	도	도	385	164	158	164	국	국	국토해양부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5	801-5	801-5	답	답	63	63	63	63	강혜*	강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1 현대글로리아파 1-1106				
46	801-4	801-4	대	대	23	23	23	23	공	공	울산광역시 북구				
47	799-4	799-13	전	전	1,505	18	18	18	박용*	박용*	경북 경주시 동천동 916-3 영보아트빌 -503				지분 9/215
									박소*	박소*	경북 경주시 서부동 207-13				지분 59/215
									박재*	박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54 삼도부련빌 107-1803				지분 59/215
48	800	800-2	철	철	521	39	40	39	국	국	국토해양부				
49	1094-14	1094-86	철	철	378	241	237	241	국	국	국토해양부				
50	759-2	759-11	철	철	264	43	44	43	국	국	국토해양부				
51	759-10	759-12	철	철	192	82	85	82	국	국	국토해양부				
52	802-9	802-9	철	철	4	4	4	4	박요*	박요*	북구 송정동 771				
소 계					29,135	11,357	11,167	11,14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9-16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협의) 년월일	허가(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허가(협의) 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7. 8.	2019 - 11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울산 북구청장 (관광해양개발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 일원	1,300	2019. 7. 8. ~ 2019. 8. 31.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조건부 허 가
2019.7. 8.	2019 - 12	울산 북구 정자 1길 111	박상준	울산 북구 정자 1길 111 일원	60	2019. 7. 8 ~ 2019. 8. 20.	수상레저사업 운영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지정목적

「201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에 따라 주요 경관구조(경관권역·축·거점)에 해당되고 경관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가. 중점경관관리구역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382	-	-
신설	산업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1,602	-	
	호계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80 ~250 일원	0,026	-	
	강동해안 중점경관관리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400~1700 일원	0,303	-	
	매곡천 중점경관관리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100, 괴정1길 122 일원	0,451	-	

나. 지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지정 사유
신설	산업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02	• 201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호계로 중점경관관리구역	0,026	• 201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강동해안 중점경관관리구역	0,303	• 201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매곡천 중점경관관리구역	0,451	• 201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2019. 7.9.	2019 - 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장	울산 북구 어물~당사	1,685	2019.7.9.	바다와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2 외 1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7.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0-3 외 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2	2019-07-11	울산의산업을활성화시키자는취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6-18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5B 18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8길 45-2	2019-07-11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52-18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8길 9	2019-07-11	행정구역인정자동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44-1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32길 5	2019-07-11	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을부여함.	2017-05-04
5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90B 1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4길 56	2019-07-11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6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504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43-6	2019-07-11	기존자연마을인차일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1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83	2019-07-11	기존자연마을인매곡본동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10-6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100-2	2019-07-11	이지역의옛지명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8-03-11
9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4-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23-2	2019-07-11	호계동에소재하는도로로법정동인호계동의이름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1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3-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66-2	2019-07-11	주변의지명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1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09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57-2	2019-07-11	염포항개항지를연결하는도로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7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정자8길 9	정자동 152-18	2019. 7. 11.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7.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82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와 용어가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물품관리공무원 직명 일치(안 제2조 제2항, 제4항)

가. (현행)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물품관리관

나. (현행)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불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

(개정)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 변경(별표)

- (현행)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 이하
- **(개정)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변경**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2조 및 제53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3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03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③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내용년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 ----------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 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
[별 표 1]	[별 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 (2) (생 략)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생 략)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생 략) (2) 소모품 ① ~ ③ (생 략) ④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 (4) (생 략)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 (2)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현행과 같음) ② ---------- -- 50만원 이상의 물품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50만원 미만---------- ----------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의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